



「공익법인」 의무사항 등 안내말씀

[(사)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구하]

안녕하십니까?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귀 단체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1.4분기 공익법인으로 최종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.

【법인세법상 의무사항】

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면, 「법인세법」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에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*하여야 하며,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*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63호의10 서식 / 사업연도 종료일이 '21.12.31.인 경우 ⇒ '22.4.30.까지 보고

구 분	내 용
법인세법 시행령 §39⑤~⑥	<p>❶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(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공익법인에 한함)</p> <p>(1)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</p> <p>(2)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, 유사 목적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</p> <p>(3)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·국세청·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공익위반 관리·감독기관 홈페이지와 해당법인 홈페이지를 연결할 것</p> <p>❷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</p> <p>❸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(단,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)</p> <p>❹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</p> <p>❺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/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</p> <p>❻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</p> <p>❼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</p> <p>❽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(단,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§43③, ④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제외)</p>

※ 「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」 및 「결산서류 등」 공개방법 (위 의무사항 중 3,7번 관련)

- 국세청 홈택스*(www.hometax.go.kr)와 공익법인 등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

* 홈택스 로그인 > 세금종류별 서비스 > 공익법인공시 >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* 홈택스 로그인 > 세금종류별 서비스 > 공익법인공시 >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

[지정취소 사유 및 재지정 배제]

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외에도 아래의 사유로 지정취소 될 수 있으며,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지정기간 중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이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
법인세법 시행령 §39⑧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❶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(가산세 포함) 추징된 경우❷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가.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나.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(전용계좌 개설·사용, 결산서류 등 공시, 외부 회계감사 의무 제외)다.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❹ 법인의 대표자, 대리인,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❺ 법인이 해산한 경우

※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“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재지정이 배제됩니다.

[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]

💡 이제 편리한~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세요!

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흠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며,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은 ①「기부자별 발급명세」 작성 · 보관(5년간) · 제출의무 ②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.

☞ [접속경로] : 흠택스 > “자주 찾는 메뉴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메인화면

- ① 「기부금영수증」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3호의3 서식*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* '21.7.1.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가능
- ② 「기부금영수증」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「기부자별 발급명세*」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*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5호의2 서식
- ③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「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*」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5호의3 서식

[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]

공익법인으로 지정시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도 해당되므로 관련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의무 불이행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① 국세청에 제출·신고해야 하는 서류

구 분		내 용
① 전용계좌개설 신고	• 대상	모든 공익법인 (종교단체 제외)
	• 신고기한	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
②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	• 대상	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
	• 제출기한	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
③ 결산서류 공시	• 대상	모든 공익법인 (종교단체 제외) 다만, 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
	• 공시기한	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
④ 외부전문가 세무회계인서 제출	• 대상	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,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
	• 제출기한	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
⑤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	• 대상	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(종교·학교법인, 유치원 제외)
	• 제출기한	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

② 공익법인 운영시 지켜야 하는 의무

구 分		내 용
① 장부의 작성·비치		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(10년간 보존)
② 전용계좌 사용		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
③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	출연재산	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
	매각대금	1년 내 30%, 2년 내 60%, 3년 내 90%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
	운용소득	1년 내 70%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(주식 5%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80%)
	의무지출	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%(주식 10%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3%)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
④ 주식관련	출연 받거나, 취득하는 경우	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* 10%(자선·장학·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%)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상증법 제48조 제11항 요건 불충족한 경우 5%
	계열기업의 주식보유	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%(외부감사, 전용계좌 개설·사용, 결산서류 공시이행시 50%) 초과보유 금지
⑤ 이사구성 등 제한		출연자 등이 이사의 1/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
⑥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		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,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 (의료법상 의료법인,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)
⑦ 기타		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, 자기내부거래 금지,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등

※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 > 국세신고안내 > 공익법인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